

[問] 저는 D工業(株)의 防火管理者입니다. 저희 工場은 化學工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危險物을 多樣한 方法으로 製造・貯藏・取扱하고 있는 데 각 製造・貯藏・取扱所마다 消火施設의 設置基準이 相異하고 復雜하여 未備點을 补完코자 檢討하고 있으나 어려운 點이 많습니다.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要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1. 消火施設의 設置對象이 되는 危險物施設은 小量取扱所와 製造所等입니다.

2. 小量取扱所에 대하여

가. 消防法 施行令 別表 2에 서 定하는 指定數量의 1/5以上指定數量未滿의 危險物을 製造・貯藏・取扱하는 곳을 小量取扱所라고 하며

나. 小量取扱所는 消火施設을 設置해야 할 가장 작은 규모의 危險物施設로서 消火施設의 設置・維持 및 危險物製造所等施設의 基準 등에 관한 規則(以下 本稿에서는 “消防施設設置基準”이라 한다) 第 2 條 1項 3號에 따라 同 別表 4, 附屬用途別로 追加하여야 할 消火器器具3項에서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適應消火器를 1單位以上各施設마다 1個씩 設置하면 됩니다.

3. 製造所等에 대하여

가. 消防法 施行令 别表 2에 서 定하는 指定數量以上의 危

險物을 製造・貯藏・取扱하는 곳을 製造所等이라 하고

나. 製造所等에 대한 消火施設의 適用基準은 消防施設設置基準 第267條乃至第271條와 같으며 이를 살펴 보면,

다. 製造所等을 消火難易度에 따라 ① 顯著하게 消火가 困難한 製造所等 ② 消火가 困難한 製造所等 ③ 其他 製造所等과 같이 3가지로 分類하는데, 그 分類方法은 消防施設設置基準 別表 15, 消火難易度에 따른 危險物製造所等의 區

라. 이와 같이 區分을 한 후 顯著하게 消火가 困難한 製造所等에 該當되면 消防施設設置基準 第268條에 따라서, 消火가 困難한 製造所等에 該當되면 同 第269條에 따라서, 그리고 其他 製造所等에 該當되면 同 第270條에 따라서 消火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며, 이때 消火器의 設置에 있어서는 同 第271條에 의하여 所要能力單位를 計算하여 設置하여야 합니다.

4. 其他事項

가. 危險物의 消火施設을 檢討하실 때에는 警報設備도 同時に 檢討하는 것이 좋으며 警報設備에 관하여는 消防施設設置基準 第272條에 의하십시오.

나. 適應消火施設의 判定은 消防施設設置基準 別表 1, 消防對象物 및 危險物別消火設備의 適應性에 의하되 例를 들어 第 2 類 危險物은 물을 棒狀으로 放射하는 것(屋內・外消火栓)과 泡沫을 放射하는 것(泡消火設備)이 모두 適應性이 있는 데 이때 인근에 이미 설치된 屋外消火栓이 있다면 이를 利用하여 施設을 擴張使用해도 좋겠으나(經濟的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다 좋은 效果를 期待하기 위하여 專門家와 設備의 選擇等을 相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金信教

〈本協會 點檢 1部・課長〉

相談코너

安全點檢

분에 定해져 있으므로, 제일 먼저 消火施設을 檢討하는 製造所等이 위의 3가지 중 어느 것에 該當하는가를 判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80드럼(76,000)의 경유(지정수량 500L)를 貯藏하는 屋內貯藏所라면 第 4 類의 危險物을 指定數量의 152倍, 即 150倍以上 貯藏하는 屋內貯藏所이므로 消防施設設置基準 別表 15에 따라(表의 둘째칸) 顯著하게 消火가 困難한 製造所等에 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特殊建物所有者로서 계약시마다 保險者가 告知義務와 고지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이에대한 說明을 하여주십시오?

[답] 保險者가 계시 약마다 고지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코자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被保險者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告知義務라고 합니다.

이는(商法 제651조) 어디까지나 告知는 계약이 성립시까지 하면 되고 또한 이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告知義務는 보험계약의 전제요건이며 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한 또는 계약의 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므로 보험계약자등의 告知義務가 이 告知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그이상 보험자가 이 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告知義務에 위반한 保險契約者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告知義務에 관한 商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特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保險契約者는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는 결대적 危險 사항과 關係的 위험 사항이 있는데 전자는 직접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예: 건물내의 引火하기 쉬운 물건의 장치, 피보험자의 유전 既往症, 건강상태 등)을 말하고 후자는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예: 건

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代理人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商法 제646조, 민법 제116조)

여기에는 告知하는데 時期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告知는 계약당시에 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듯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지의무 위반의 유무는 계약의 성립시를 標準으로 하여 정하며 청약시를 標準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 성립시에 한 고지를 성립후에 변경, 철회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성립시의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보정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을 개신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표준으로 하여 고지의무의 위반의 유무를 정합니다.

告知의 방법으로는 법률상의 제안은 없으며 書面에 의하든 口頭에 의하든 상관없으며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의무자 자신이든 代理人으로 하여금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

相談 코너

火災 保 險

불근처의 상황, 피보험자의 직업, 계약자의 관계등)을 가리키며 또한 告知義務者란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써 보험계약자와 被保險者를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

被保險者는 손해보험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人保險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代理人에 의하여 보험계

金 陽 勳

〈本協會 保險 2部·代理〉